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세나테크놀로지(“회사”)의 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의장)

-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의

#### 제6조 (종류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## 제7조 (소집권자)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8조 (소집절차)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#### 제9조 (결의방법)

- ① 이사회 결의는 재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당해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나, 이사회 결의를 위한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0조 (부의사항)

-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주주총회의 소집
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(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4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5) 정관의 변경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(13) 현금·주식·현물배당 결정(정관에 의해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.)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·감사의 보수
- (16) 상법 제542조의9 제3항내지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최대주주(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)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
- (17) 상법 제461조의2의 법정준비금의 감액
- (18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 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2) 공동대표의 결정
- (3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4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(5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(6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이 소요되는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- (7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
- (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  - 3. 재무에 관한 사항
    - (1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이 소요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
    - (2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이 소요되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    - (3) 결손의 처분
    - (4) 신주의 발행
    - (5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    - (6) 준비금의 자본전입
    - (7) 전환사채의 발행
    - (8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    - (9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이상의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    - (10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    - (11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    - (12) 자기주식의 소각
  - 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    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   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   - (3) 타회사의 임원 겸임
  - 5. 기타
    - (1) 중요한 소송(소가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3이상)의 제기
    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    - 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  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**제12조 (위임)**

- ① 이 규정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항이 아닌 통상적인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결정하고 집행하기로 한다.

-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당해 사항의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**제13조 (이사회 내 위원회)**

-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14조 (감사의 출석)**

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**제15조 (관계인의 출석)**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6조 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**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7조 (의사록)**

- ①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## 제18조 (간사)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회사에서 이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### 부칙

- 1. 이 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이 규정은 202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.